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236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7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으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중 약 30㎡를 임대차보증금 3,8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고,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3,800만 원을 송금하였다.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지도 않았고,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갑 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,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라거나,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정성종